

## Appeals Procedures/ 이의제기 절차들

### 이의제기(appeals) – 수업 과정 학생들 (coursework students)

어떤 학생이 평가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고 믿거나, 또는 부여된 학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평가 항목이든지 그 주어진 학점에 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우선 그 학생은 관련된 교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. 이러한 비공식적 대화 후에도 여전히 이의제기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학생은 자기가 속한 회원 학교의 학술 위원회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낙제한 최종 점수와 관련해서 회원 학교에서의 재검토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은 본부의 학술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;

- (a) 아래의 근거에 한하여 학술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;
- (b) 이의제기는 회원 학교로부터 온 이의제기에 대한 확정된 결과를 수령한지 평일 십일 안에 학장에게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;
- (c) 그 학생은 학장에게 재검토와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들이 회원 학교에 의해 준수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;
- (d) 학술 위원회는 그 이의제기를 재량껏 다룰 것이다;
- (e) 학술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 될 것이다.

### 이의제기 – 연구 학위 지원자 (research candidate)

연구 학위 지원자들은 학술 위원회의 다음의 결정에 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:

- (a) 지원한 과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.
- (b) 학위를 수여하지 않겠다는 결정.
- (c) 재-제출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.

지원자는 다음의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:

- (a) 과정상의 변칙.

(b) 편견 또는 선입관의 증거.

연구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 운영될 것이다:

- (a) 지원자는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위에 언급된 결정을 통보받든지 30일 안에 학교의 학장에게 문서로 이의제기를 통보할 것이다;
- (b) 이의제기를 받으면 학장은 그 문제를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
- (c) 공식적인 이의제기 통보를 받으면 상임위원회는 즉석으로 '연구 대학원 이의제기 위원회'를 구성하고 다음의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:
  - (1) 다음을 구성한다:
    - (i) 본부 위원회의 회원인 독립 의장,
    - (ii) 학술 위원회의 의장
    - (iii) 대학의 학장
    - (iv) 대학원 학생
  - (2) 학술 위원회의 아래의 결정에 불복하는 연구 학위 지원자가 제기한 이의를 확정하고 본부 위원회에 보고한다:
    - (i) 지원 과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
    - (ii) 학위를 수여하지 않겠다는 결정
    - (iii) 재-제출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
- (d) 이의제기 위원회(the Appeal Committee)는 임명된 후 21일 안에 모여야 한다;
- (e) 이의제기자는 이의제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자료라도 이의제기 위원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;
- (f) 이의제기자는 또한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 앞에 출석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
  - (i) 이의제기자는 자기를 지원해줄 기능을 가진 조연자를 동반할 수 있다;
  - (ii) 그 조연자가 변호나 대리자로서 행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;
- (g) 이의제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, 본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될 것이다.